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에이동 103호

원고(재심원
고)

임그루



36322

2060619 - 762564 ↓

(민사2과 제32민사부)

2016-053-905-006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6재나 905 기타(금전)

예정 기일 :

담당재판부 : 제32민사부

법원사무관 임길원

직통 전화 : 530-2268

팩 스 : 530-1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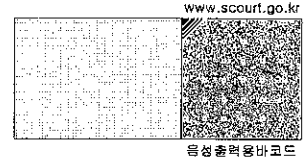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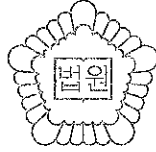
e-mail :

재판부 이메일 주소는 문의사항을 연락하기 위한 연락처이므로 재판부 이메일 주소로 전자
문서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제출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진행과 관련된 정보(송달과 확정내역 포함)는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나의사건검색' 란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등경매사건은 대한민국법원 경매정보홈페이지(<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사건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 3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재나905 기타(금전)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임그루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에이동 103호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케이티노동조합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자 위원장 정윤모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6재나35 판결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7. 13. 선고 2009가합9702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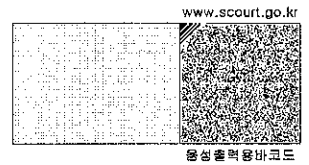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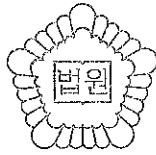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 판결과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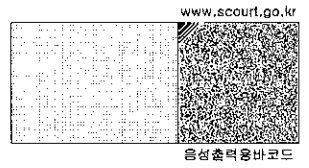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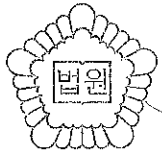
이 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제1심의 소는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임을 확인하는 행정사건으로서 관할법원인 행정법원의 심판 대상이므로 행정법원으로 이송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을 한 이 법원은 이를 민사사건으로 취급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관한 재심판결에 관하여 심판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소정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던 끝에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하는 '조합활동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기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 규약 제12조 및 신분보장규정 별표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신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들어, 피고에게 임금 피해액 상당의 20,00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는바, 이는 민사사건으로서 위 제1심에 대한 항소심 판결 및 그 항소심판결에 대한 재심판결은 모두 이 법원이 적법한 재판권



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남

박형남



판사

이정희

이정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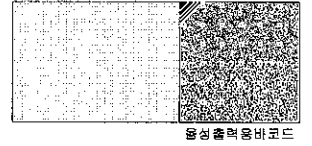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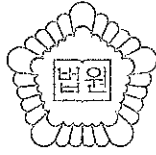


판사

이민영

이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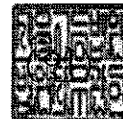


정보입니다.

2017. 6. 28.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임길원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보를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